

제43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5월6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9)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2)
10.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1)
1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2)
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5)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1)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7)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5)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3)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2)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4)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5)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6)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3)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2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27.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31.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5.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36.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3)
3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3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3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2.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5.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2)
5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8)

5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5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6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63.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6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0)
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66.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6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상정된 안건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7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7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7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7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7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9) 7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2) 10
10.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1) 10
1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2) 10
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5) 10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1) 10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7) 10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5) 10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3) 10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2) 10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4) 10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5) 10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6) 10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3) 10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43
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43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 43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	43
2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	43
27.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6
2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7
2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50
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	52
31.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52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52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52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52
35.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	53
36.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3) ……………	54
3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	55
3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	55
3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5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5
4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	55
42.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5
4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5
4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5
45.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5
4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5
4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5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7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7
5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322) ……………	60

5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8)	60
5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61
5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61
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5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5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61
6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62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62
63.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63
6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0)	63
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63
66.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63
6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6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8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전에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9개 위원회 소관 63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부디 그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5)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9)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4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및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각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현행법을 폐지시키고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친일재산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일재산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균택·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의 피고인이 고의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구제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의 지연을 막고 범죄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기우종 법원행정처장권한 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는데 1분만 하신다고 하셔서, 우선 5분으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박균택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하되 2년을 연장할 때는 우리 법사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3년으로 하되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법사위 승인을 받아서 활동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까? 본회의로 승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다른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법사위의 승인이 아니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는 걸로 수정할 것

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박균택 위원 그리고 행정처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소속법 법안에 의하면 원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시행 당시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사 착오가 있었는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작한다’,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즉시 시행 가능한 것으로 하고 소송 계속 중인 사안도 가능한 것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제 의견대로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대로 즉시 시행을 하고 기존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대안) 의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촉진법(대안)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부칙과 관련하여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양당 간에 소통이 있어서 지금 1소위 법안들은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다음은 그동안 미상정되었던 고유법안, 제9항부터 제21항까지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2)

10.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1)

1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2)

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5)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1)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7)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5)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3)

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2)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4)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5)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6)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3)

(10시22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9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용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에게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재항고를 허용하고 항고를 거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사실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절차인 수사절차의 종국 처분으로서 형법을 적용·실현하는 형사절차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직권주의가 강조되는 형사절차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검사의 기소·불기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성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의료·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폐쇄된 환경인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수용관리, 계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경찰복지법이나 소방공무원복지법과 비교하여 별도의 지원 근거가 법률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찰복지법 등의 구체적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동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귀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화 요건 중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능력 요건을 면제·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상 귀화심사를 위한 최소 소요기간이 간이귀화·일반귀화 기준 19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서 개정안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대하여 처리기간 설정·공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장애인 판정절차부터 마련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장애의 종류·등급별로 완화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성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환대상외국인 중 권리구제 절차 진행 등으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는 자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 외국인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외국인을 출국 전까지 출입국항 밖에서 대기할 수 있는 출국대기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출입국항 밖에 설치하는 출국대기소는 안전 확보를 위한 폐쇄성과 인도적 처우를 위한 개방성 간의 조화로운 운영 방법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출국대기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건축물, 인력 증원 등을 고려해서 비용 대비 효용성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기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행위 또는 통행의 지속적·반복적인 방해로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공장소 질서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소음에 비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음 발생 행위와 지속적·반복적 통행 방해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칠 수 있는 공공장소 질서방해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및 예술활동의 자유와 관련될 수 있는 행위를 형법상의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 보아 ‘공공장소 흥기소지죄’에 준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형벌의 보충성 측면과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박군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공소제기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 효과를 배제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공소제기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무효여부는 법원이 사건별로 사후에 판단하게 되므로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문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박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12조 제1항·제3항을 개정하여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신문조서를 제312조제4항에 따른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로 간주하려는 취지이나 제312조제4항 중 ‘피고인이 아닌 자’에 ‘공범인 피고인’이 포함되는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6항 김용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성매매, 성폭력범죄 등의 사유로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원에 대해서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동종·유사 사건의 범위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제척사유 성격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비례의 원칙상 경미한 징계를 받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척할 것인지, 징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제척 효력이 지속되게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7항 및 제18항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17항과 18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수익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세조종행위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추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은 제2조 나목에 열거된 죄에 대해서만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범죄수익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해당 죄도 여기에 추가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는 경우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가 병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스토킹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살인, 강도, 성폭력, 스토킹범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제19항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근거를 신설하고 보석 조건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전자장치 효용 훼손에 대한 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이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도주 및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고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석 조건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전자장치 효용을 훼손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전자장치 피부착 대상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현행법은 전자장치 효용 훼손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진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익소송으로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소송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감면 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각급법원에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를 두려는 것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려는 자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권리 실현 등 인권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나 소송의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소송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문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패소하였음에도 소송비용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소송에서의 패소당사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문위원회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구성 인원의 적절성 및 그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해당 여부는 ‘최후 임대차계약 체결일’의 기준을 따르되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액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기준 대신 계약 체결 시점의 시행령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대상 보증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시점을 구분하여 기존 담보물권자의 기대이익도 함께 고려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신뢰 보호 문제와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 수정이 가능한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계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시점의 적정성 및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좀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서영교 예.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우선 박지원 위원님께서 오늘 급하게 인터뷰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먼저 하시고 윤상현 위원 하시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양당 간사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셔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조금 변화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를요.

대체토론 순서…… 희망하시는 분만 해도 좋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만 할까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희망하는 사람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러면요 희망하시는 분만 하고 오늘 일도 많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여야가 소통이 잘되시는군요, 아주.

다음, 토론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오늘 답변 가지고 오셨어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예, 위원님 지난번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였고 무겁게 전달드렸고……

○박지원 위원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도하 많은 언론들이 사설로 ‘대법원이 공백된다’, 그리고 9월이면 또 한 분의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추천이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부인이 대법관 안 된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지원 위원 좋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 개혁하자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처장!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중 예, 가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전광훈 목사님은 보석이 됐는데 주거 제한 보석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주거 제한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주거지가 제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위원 아니요, 제가 봤어요. 주거 제한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검찰국장, 장관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주거 제한 아니에요?

○법무부검찰국장 이응철 제가 알기로 주거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법무부검찰국장 이응철 주거 제한돼 있는 것으로……

○박지원 위원 주거 제한이에요.

○법무부검찰국장 이응철 예.

○박지원 위원 그리고 전광훈 목사 스스로가 ‘나는 중환자다’ 하신 분이 집회에 나가서

모든 잡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데 처장권한대행,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을 일탈하고 있잖아요. 보석 조건을 일탈한다고 하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취소 사유 여부를 심리할 수는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보석 조건이 주거 제한되고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접촉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렇게 민망스럽게 돌아다니면서 할 말 다 하고 돌아다니면 보석 조건을 일탈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지원 위원** 모든 것을 재판부에서 판단하지요. 그런데 그 재판부가 뭐 하고 있냐 이거지요.

법무부장관님, 검경은 그러한 주거지 일탈을 한다고 하면 잡아서 법원에 보석 취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저희들이 검찰에서,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배 여부는 관련된 의견을 저희들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박지원 위원** 아니, 특별한 내용이 있건 없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어쨌든 간에 접촉 제한이라든가 주거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박지원 위원** 그것이 문제고 주거 제한을 풀어서 나가서 윤석열이랑 접견하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주거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지에만 있는 것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

○**박지원 위원** 아니, 그게 잘못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 저도 구속돼서 주거 제한으로 운동도 저희 아파트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어쨌든……

○**박지원 위원** 병원 지정해 주니까 여의도 아파트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만 왔다 갔다 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하여튼 전광훈 목사의 보석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검토 이후에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박지원 위원** 빨리 제출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 법치국가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전광훈 목사가 나이도 들고 보석해 준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켜야지요. ‘나는 환자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듯이 일탈을 해 가지고 하면, 법원에서도 두고 보고 검찰에서도 두고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니잖아요?

처장, 잘 아셨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반드시 조치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필요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보석 조건이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 제한, 집회 참석 금지,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은 신청됐고요.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최근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만 예정된 수순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지요,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다, 이것은 수사 또 재판을 넘어서 아예 입법으로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 무죄 세탁하겠다는 정말로 전대미문의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시기·절차 등을 한번 논의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대통령께서 내용에는 동의하시는 게 아니냐,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시기·절차를 보고 처리해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민주당 위원분들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헌정질서 최고 수호자로서의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서 장관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또 여야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요망하는 바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로 치명적인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8개 사건 또 기타 사건에서 12개 사건을 다룬다고 하는데 그 법안에 따르면 특검이 검찰에다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무조건 15일 내로 자동으로 이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원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특검이 공

소취소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이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특히 한번 보십시오. 작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났습니다.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정지가 돼 있거든요. 이런 사건까지 가져와서 공소취소를 한다? 세상에 어떤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이해충돌 회피 원칙에도 반한다. 결국 대통령은 엄밀히 따지면 피고인 아닙니까?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한다? 임명을 한 다음에 다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취소가 된다. 결국 어느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거고 더군다나 법원의 판단을 특검이 강취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특검이 영구적으로 공소를 취소한다? 이 법안에도 맞지 않는다. 사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 법안, 세상에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특별 관리해서 결국에는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장관님께서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장관이 아니라 진짜 법조인으로서 한번 이 법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의향이 없으신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지난번에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들, 특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고요. 저희들도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장관님, 최근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수원지검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종적인 검찰 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현희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연어·술 파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어·술 파티를 통해서 진술을 회유하고 증인을 압박하고 그 결과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기소를 한 그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증인들의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교도관의 진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당시의 진술 조작과 그리고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이런 정황이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의심을 받을 만한 상당한 정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수원지검이 이 피의자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소환을 했고 또 변호인을 통해서 특정 진술 방향을 요구하거나 형량과 관련된 이익을 암시했다는 그런 녹취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충분히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라든지 모해위중 교사죄가 성립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전현희 위원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드러난 셈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 당국은 이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특검을, 특검법을 발의해서 드러난 이 범죄의 혐의에 대한 정황을 수사를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현희 위원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검이든지 현재 박상용 검사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기 때문에 공수처에 지금 고발·고소가 돼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죄의 혐의가 여러 가지 정황상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상 이것을 덮으라는 얘기, 즉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검찰 자체의 조사라든가 또는 법무부의 조사, 특히 최근의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은 꼭 수사를 통해서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더구나 이 사안은 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관여되어 있는 이런 사건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대검을 통해서 보고가 됐고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그런 정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지금 특검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고위층과 검사들과의 일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전대미문의, 정권이 총동원된 그리고 검찰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이런 사안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검에서도 저희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나 일각의 의도는 사실상 범죄 수사를 막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법치주의를 몰각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직권남용이나 모해위증 교사의 혐의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원칙적인 말씀이십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피해자의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조작된 수사와 조작된 기소로 이런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소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통상적으로 재심에 준하는 그런 사유들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 토론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 이 헌법파괴와 법치파괴를 멈추시겠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어떻게 법치주의라는 말을 입에 오르내리십니까?

박지원 위원께서 조금 전에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 대해서 제청권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청권, 제청의 뜻이 뭡니까?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제청권까지 형해화합니다. 코드인사들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부부를 헌법재판관, 대법관 다 시켜야 되겠습니까? 더 기르세요, 코드인사들.

오늘 신중오 고법 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씨 사건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왜곡죄 그리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실체도 없는 룸살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용 검사는 고검 인권 TF에서 지금……

정성호 장관, 이거 지금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작기소 특위 보셨습니까? 교도관들 다 나와서 술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이런…… 지금 공포 사회입니다, 공포 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장관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요. ‘공소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

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작년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셨어요. 뭐라고 했냐? 최근에 입장이 뭐로 바뀌셨냐?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다'라면서 이런 공소취소 특검을 할 것을 예상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답변하신 거?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회에서 입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것이 어떻게 입법이 가능한 사건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다.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취소는 해당 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대법원에 가서 7년 8개월 받은,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겁니다. 선거법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해당 검찰청도 아닌, 검찰청 검사들이 기소한 것을 특검 검사가 공소취소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라고요? 저는 이것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대로입니다.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절차의 기본 원리를 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법률가적 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잘 숙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정성호 장관님, 이렇게 애매한 답변 하시면요 스스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께서 이런 정도의 애들러서 하시는 말씀은 위헌적이라는 법률가적 양심에 기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지금 시기만 문제 삼지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걸 뭘니까?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정성호 장관께서 설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적어도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위헌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고 도대체 대통령 사건만 특별한 재판부에서 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공정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폐기를 여당 의원들께 설득하십시오. 다행히 법사위 위원 중에서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폐기 설득해 주시고요.

대통령께는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가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권력의 오용과 남용,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경원 위원** 그러면 공소 여부에 대한,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것을 빼야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권한 여부는……

○**나경원 위원** 여기 제6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그 권한 여부는, 위원님들께 수사의 대상이라든가 권한 또 범위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런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암흑의 역사로 만드시지 말고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 조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권한대행님, 이번에 대법관 제청이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누군가의 부인이어서 제청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법관으로서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법관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누군가의 부인이어서 제청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사유는 말이 되지 않고 그러면 대법원이 굉장히 근대화가 덜 된 조직이다, 전근대적인 조직으로 비난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동해안 남북 어부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 사건이 50년 동안 누명을 쓴 사건이고요. 과거 불법 구금과 고문이라는 국가 폭력으로 무고한 국민의 삶을 짓밟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최근 진화위 결정으로 간신히 명예 회복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지금 사법부가 재판 지연, 송달 지연으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하여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고요.

당사자 대부분은 아마 고문 후유증, 고령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유족들도 한 여든 넘게 고령이신데요. 재심이 지금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법원에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대법원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한 달째 지금 묵묵부답이거든요, 대법원에서 자료도 주시지 않고.

왜 재심이 열리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심 사건 지연 실태를 즉각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지고 억울한, 고령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받는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판이 제대로 열리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재판부의 권한이 아닌 부분에서 송달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그 법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지난 1월에도 총리께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천명하셨고 또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요구권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이제 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법안에서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법무부에서 좀 더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쇼츠를 만드셔서 검사들이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개혁 법안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한 77만 건 정도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거든요, 기소 하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수만 건 정도를 보완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금 제가 보완수사 어떤 거 하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통계를 요구해도 잘 주지를 않고 있어요. 대구지검이 보완수사를 보완수사 요구보다 몇 배를 더 했다고 언론보도에 대서특필되고 있길래 그럼 조사는 몇 건 했고 영장은 몇 건 청구했고 보완수사한 내용을 통계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통계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 사건을 가지고 누가누가 수사를 잘하나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검사가 보완수사 하지 않은 나머지 수십만 건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해 가지고 검사가 기소해서 전부 유죄 나고 있거든요. 그럼 검경이 전부 일일이 검사들, 경찰들 다 한 명씩 나와 가지고 누가누가 수사 잘했는지 이게 지금 그렇게 서로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특정 폭력 사건을 가지고 장관님께서 검찰의 수사를 칭찬하셨던데 그 사건이 그렇게 검사의 수사권 사수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그 사건이 수사·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여섯 차례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CCTV를 본 영장검사는 그 CCTV를 보면서도 왜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가해자 압수수색이라든가 피해자 가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뒤늦게 유족이 항의해서야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못되게, 수사의 완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제대로 기소할 수 있도록

록,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이미 지휘·명령·복종 이런 관계는 떠난 지 오래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범죄자가 확실히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경찰과의 관계가 그런 어떤 구조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완수사 관련해서 칭찬하는 것들도, 저는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말 진실이 은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놓은 것들 그런 점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말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협력해 가지고 소통해 가지고 완결된 기록들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에 있어서 좀 완벽하게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보완수사인지 보완한 건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게 보완수사, 저도 ‘수사’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수사를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완결된 기록을 넘겨 가지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할 건지는 저희도 고민할 것이고, 이미 정부 내부의 방침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만 지금 정부안을 준비하는 분들이 검찰에서 나가 있지만 행안부나 이렇게 온 분들은 수사를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단의 방향은 이미 대충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유죄의 판결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건지 문제는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게 계속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고 박은정 의원실에 자료도 주시고 더불어서 다른 위원님 방에도 자료 주셔서 이럴 때 좀 박차를 가해서…… 명예만이라도 회복하자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들 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던 재판, 풀어줄 수 있게 오늘 말씀 나온 걸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각 방에. 법원 측에 부탁 요청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면요, 저희 검찰에서 과거 간첩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검찰 내부에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언론보도라든가 다른 기타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재심청구인한테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선 청에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요. 협력하겠습니다, 저희 검찰에서도.

○**위원장 서영교** 그 한을 풀어야 되고 제자리 잡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더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규택 위원.

○**광규택 위원** 법무부장관님, 연어·술 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법무부장관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러면 법무부장관님이 혹시 대검찰청을 통하든 그 TF에 5월 17일 이전까지 어떤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지시라기보다도 저희 내부 회의에서, 어쨌든 징계시효가 있기 때문에 징계시효 도과되지 않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는 했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런 지시를 하시는 것이 적당합니까?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김성태 본인도 술자리를, 술을 마셨다는 걸 부인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것을 느낀 교도관도 다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담당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 TF에서 일체 소환하거나 하는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고검에 있는 TF에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라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검찰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지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는 술을 반입했냐 안 했냐 이 문제 외에 다른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거고요.

○**광규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 17일이라고 하는 그 시효는 일방적으로 주장된 날짜 아닙니까? 그거를 징계시효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라, 법무부장관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직권남용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징계시효 넘기지 않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의 일입니다.

○**광규택 위원** 검찰청법에 규정된 구체적 사건에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법무부장관이 나서 가지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려라, 그렇게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박상용 검사에 관련한 감찰이 시작된 지가 이미 9개월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광규택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가급적 신속한 결론을 내리라고 그래야지 5월 17일 날이 징계시효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결론을 내려라 이러니까 이렇게 졸속적인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5월 17일에 맞춰서 내라는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국회 법사위에 지난달 8일에 나오서 가지고도 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특정을 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5월 17일이라는 거는 소설 속에 있는 날짜에 불과해요. 그걸 왜 법무부장관이 날짜를 특정해 줘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국정조사 과정이나 저희 법무부 자체 TF 점검 과정에서 그 당시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관해서 도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곽규택 위원** 장관님이 그런 식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시니까 국정조사는 특검법이든 다 답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가 그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곽규택 위원** 보십시오. 장관님, 만약에 조작기소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형법적으로는 무슨 죄가 되는 거지요, 당시 검사들이 조작기소를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검사가 직권남용을 했을 때 수사를 어디서 하나요? 공수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맡겨 봐야지 뻔히 미리 답을 정해 놓은 국정조사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특검을 또 하겠다? 엄연히 수사를 중립적으로 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가 감찰을 한 거지 그 수사 내용을 가지고 감찰 절차를 밟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특검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작기소 했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수사권한은 공수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고발이 돼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결론을 안 기다리고 특검법을 또 하겠다고 하는 여당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께서 숙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 특검법에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특별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취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이 아무리 민주당에서 5선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담당하시는 법무부장관 아니십니까? 그리고 법조인 아니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공수처에서, 그런 거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면 거기다가 맡겨야지 민주당에서 또 추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내 사건번호 취소해 달라…… 이게 정상적인 절차들 입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점들을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특검법 반대하십시오, 정부에서는.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 하시고 최혁진 위원 하시고 조배숙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성윤 위원 하시고.

김동아 위원 토론해 주세요.

○**김동아 위원** 오늘 한 부장판사님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우리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경원 위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경악스럽고,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항상 국힘당의 습관입니다, 습관. 서해피격 사건부터 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또 이용하시고…… 너무나 참 참담하고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또한 지금 유족과 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님 본인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사건 이첩과,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동아 위원** 그 공소유지에는 공소취소가 포함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아 위원** 그러면 채 해병 특검에는 이첩과 공소유지가 있고 공소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첩이라는 것은 기존에 진행된 사건을 특검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동아 위원** 윤석열 내란특검도 똑같이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이첩과 그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동아 위원 종합특검 역시 기존 유지되는 재판의 이첩과 공소유지 권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특검 4건 모두 다 기존 재판에 대한 이첩과 공소유지, 공소유지가 결국에는 그 공소를 계속 유지를 할지 말지까지 결정하는 권한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 법안들이 다 위헌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위헌이 아닌 거지요. 최근에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작기소, 조작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검찰과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원·국정원,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된 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에 대해서 장관님 많이 잘 파악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거 그대로, 이대로 공수처나 검찰 내부 진상조사만 가지고서는 다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국가 권력기관들의 권한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 사항입니다.

○김동아 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말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 가지 더,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울산 울주군 아버지와 아이 넷, 일가족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따로 개별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보고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동아 위원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일가족, 아이 넷과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하게 된 원인을 보니까 유일하게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께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고 생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자 그 아버지가 아이 넷을 데리고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 법안도 많이 올라와 있고 올해 연말에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법률인가요, 거기에 육아나 이런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데.

법무부 내부에서도 지금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하거나 향후에 수용자 처우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 수용자 가족들의 생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안도 통과되고 예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미성년 자녀들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법원행정처 대행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도 가족 내부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있지요, 현재?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글썄요,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김동아 위원** 피고인이 유능한 변호사 사서 그런 부분 주장을 하면 반영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직권적으로 신문 과정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내부 교육을 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기록 전체를 살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따로 교육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렇게 법이 너무나 야박해서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나 영장을 하는 단계에서 걸러 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걸러 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를 풀어 주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지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가족이 헌법재판관이라고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안 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 제기할 만한지. 아니, 남편이 피감기관에 있는 분이 법사위에 계속 있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지금 가족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대법관 하는 건 문제라고 얘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조작기소 공소취소 관련된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다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위헌은 지금 자기들이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 공천을 받아서 나가 있어요, 후보로.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1심 재판 중인 분 아니세요? 그게 위헌이잖아요.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대놓고 후보로 공천을 해 버리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박완수는 또 어떻습니까. 22년 지선 때 명태균 등등 측근들의 국정농단 개입 이런 의혹 받은 분 아니에요? 대놓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공천을 해서 광역단체장후보로 내세우는 것 이게 헌법을 무시하는 거고 국기를 문란하는 거고 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기는 건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자기들이 조작기소 하고 증거 인멸하거나 축소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검사들만 공소취소 요청할 수 있다? 이것 아니더라고 해서 지금 법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아니, 갑자기 대통령 얘기는 왜 합니까? 대통령은 상징인 거고 이런 일을 겪은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 건가, 공당이 라면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명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니까 말기면 안 된다? 법무부장관님 누가 임명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최혁진 위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최혁진 위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다 대통령 방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전부 다 대통령 임명권 박탈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특검이 만약에 조작기소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한다 그럴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증거가 명확히 나와야 되고 분명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최혁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직권남용이 되는 거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를 삼을 걸 문제 삼아야 되고, 어쨌든지 간에 궤변으로 이 상황들을, 문제를 적당히 싸바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의원들로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미상정 고유법안으로 제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려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정부라든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해서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결국은 대형 로펌을 쓰는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형사소송에서도 지고 그 이후에는 입틀막 민사소송도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사이에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 왔는데요.

제가 꼭 찾아봤어요. 미국도 공익소송을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했을 경우에 설사 원고가 패소를 하더라도 그 공익성이 명확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물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제하고 있더라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적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일반 시민들이 거대한 기득권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을 할 때 결국은 승소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패소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유린당하는 문제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말씀의 취지와 입법 연혁 등을 포함해서 소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건 아닌데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변호사를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선임한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된 재판을 담당하신 법관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사망한 분의 보호해야 될 명예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중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죽음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혹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대장동 사건도 그래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이 5명이나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명쾌하게 해명도 안 되고 그러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죽음을 이용한다 이것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법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지금 특검법 30일 날 새로 발의한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조작 수사·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한 검사만이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소를 제기하는 건 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유지 검사가 하는 거겠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어쨌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결국은 검찰 동일체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형사소송법 이것과 부합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모순이 안 돼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어떻게 모순이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특검법에 공소유지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취소 권한도 있는 거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아무리 법률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인 게 있지요. 그런데 이 원칙을 지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예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물론 특검은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여기 이 법에 보면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은, 지금 국정조사에서 조사되지도 않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져와 가지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예 수사하지 않은 사건은 아니고요 관련 사건으로 같이 이첩받아 갖고 다 수사를 하게 되겠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리고 보시지요.

공소취소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전까지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요, 이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1심 선고 났는데도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로 읽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틀 전에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법조계. 다들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이런 법이 되느냐. 이것은 완전히 대통령 한 사람의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법의 원칙도 파괴하고 이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문명국가가 맞습니까? 문명국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보세요. 이첩 요구하면 거부해도…… 8조 2항에 보면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아도 15일이 경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첩되는 것으로 강제조항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기우종 차장님, 보세요. 지금 법원에서 한참 재판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취소해 가지고 재판 자체를 중단시키는 행위…… 사건이 최종적인 기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이 재판을 해야지요. 그런데 갖고 있는데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취소하고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특검법 관련 법안에 관해서는 상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 의견을 드릴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있어 최종적 판단하는 권한이 법원에 있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차장님이 계속 나오는 것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저도 가시방석입니다.

○**이성윤 위원** 가시방석입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이성윤 위원**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빨리 인선 좀 해 달라고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계속 차장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차장님께서 직무 유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김민기 26기, 그다음에 박순영 25기, 손봉기 22기, 윤성식 24기 판사가 추천이 됐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추천됐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네 분을 추천했는데 지금 석 달째 제청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이분들 제청 안 하고 새로 추천할 예정입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범위고요.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도 없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또 국민들의 우려 잘 알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이성윤 위원** 아니, 지금 국민들께서 왜 석 달째 대법관 임명 안 하나, 왜 제청 안 하나 이것 궁금해합니다.

차장님 나오실 때마다 말씀드려서 임명하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오실 때마다 빈손이니까 차장님이 직무 유기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이성윤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이런 직무 유기하는 대법원장이 있는데 지금 직무 유기나 이런 범죄를 지어서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그 재판을 제대로 수궁하겠습니까? 빨리 임명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시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청을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 설명을 명백히 좀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음번에는 꼭 제청하시고 나오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지난 12·3 불법계엄 내란은 총칼, 탱크로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았고, 그러면서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고 분명히 위헌적인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6월 3일 윤 어게인 공천을 통해서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정 정당의 어떤 정치행위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다만 재판에 회부돼 갖고 재판받는 분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또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국민들은 지금 윤 어게인 인사들을 다시 공천하는 것 보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피고인 추경호 전 대표를 시장후보로 임명하고 또 윤석열의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사람을 단수공천 하고 또 윤석열 호위무사를 공천하고 또 윤석열 비서실장이던 사람이 지금 공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이런 공천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윤 어게인 공천을 통해서 다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정국에 들어서서, 우리 제도권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내

란을 하려는 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조작수사 특위에서 밝혀진 내용 보면 충격적입니다. 계속적으로 대검·법무부를 통해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한테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장관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은 특검에서 관련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운 위원**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특검 조사로 밝혀야 됩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조사는 받아 보셨지만 재판은 한 번도 안 받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재판은 안 받아 봤습니다.

○**이성운 위원** 어느 국민이든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조작기소 했으면 그 재판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뭐……

○**이성운 위원** 지금 윤석열이 모든 조작기소와 조작 수사·감사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특검으로 밝히지 않으면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 법무부도 언론에 발표한 것처럼 내부에 인권준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권한의 행사라든가 또는 권력을 남용한 측면들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이성운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없는 죄를 정치검찰이 뒤쫓아 씌우고 기소 했으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맞고요. 또 특검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서 정치검사들의 못된 행태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국정원·대통령비서실, 모든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권한을 남용해 갖고, 오용해 갖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위헌이라는 거지요? 논리는 없고 선동만 있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포를 부추깁니다. 이게 정당한 정치가 아니지요.

추경호·이진숙 공천하고 윤석열 비서실장 정진석까지 공천을 하니 마니 하는 얘기 하고 있어요. 12·3 계엄 연장하고 12·3 계엄 부활을 시도한 6·3 내란 공천이나 멈추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내란 공천이

나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대로 공천을 하십시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본질적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같이 합세해서 선동하듯이 프레임을 짜서 하는 공소취소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마치 그것을 위한 특검인 것처럼. 그게 아니지요. 본질적으로 검찰의 조작수사가 있었는지를 수사로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소취소나 이런 부분, 공소유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얘기가 들어간 것을 마치 그것을 위한 특검인 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국정조사특위 결과를 볼까요. 쌍방을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었고 그런 단순한 부재의 증명이 아니고 심지어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장소가 아닌 곳에 있었다는 것이, 자료로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증거 66개 중에 검찰이 13개만 선별해서 압수수색 했다, 이런 것도 밝혀졌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일부, 검찰 쪽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이 있었지요. 김성태 ‘나는 술 마시지 않았다’ 얘기하고 방용철 ‘리호남 만났다’고 얘기하고. 일단 방용철이 리호남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인 겁니다. 진술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 진술을 제대로 하면 다시 금감원 조사받고 주가조작 수사받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증언하고 그다음에 전직이 어떠어떠하게 알려진 사람이 ‘내가 가오 떨어지게 무슨 술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진술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밝혀진 게 아니고 오히려 검찰 측 주장이 맞다고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정조사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조작기소의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맙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끝났습니까? 무슨 잔치가 끝났어요? 조작기소 잔치가 국정조사특위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즉 국정조사는 것은 수사권이 없고 해서, 의혹들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밝혀진 것들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수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하겠습니까, 검찰이 조작기소 했는데? 그러면 검경 합동수사본부 꾸릴까요? 역시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검사 사건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사건에 있어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이게 특검의 필요성으로 얘기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해서 조작기소 혐의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조작기소 혐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까지 다 받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 그 전에 얘기했듯이 대충 기소해서 가면 3심까지 가는 동안 패가망신 합니다. 변호사비가

얼마고 사람은 스트레스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그렇게 놔두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공소취소를 하는 게 맞겠지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검찰에서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떡합니까, 검찰 자신의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관련된 사건은 특검에서 공소유지 권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동아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선례가 계속 해서 있었습시다. 김건희·윤석열·채상병 특검, 종합특검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건도 아니고 관련된 사건에 의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왜 위헌입니까? 그리고 수사하던 검사가 인사이동 해서 가면 다른 검사가 공소유지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한 검사가 분리돼서, 공판검사라는 제도를 뒤서 수사·기소한 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돼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사부재리니, 왜 일사부재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사부재리니 그런 어려운 말 써 가면서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그리고 장관님, 공소취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심 선고 나기 전에만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게 마치 모든 사건을 공소취소를 다 해서 없애 버린다는 듯이 호도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닌 얘기로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과연 공소취소를 그 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이 하도록 할지 아니면 수사했던 특별검사가 하도록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무적·제도적인 어떤 선택이나 고민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숙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지 이 절차로 가는, 프로세스로 가는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것에 대한 숙의를 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조작기소 임이 만약에 밝혀졌을 때,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해방되게 해 줄 것이냐,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숙의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꾸……

○**조배숙 위원** 시간 다 됐어요. 저도 더 하고 싶었는데 안 했는데 시간 내에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마무리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시간 많이 지났어.

○**김기표 위원** 시간 1분도 안 지났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차분히.

○**곽규택 위원** 3분 지났어, 3분.

○**김기표 위원** 옳은 말 하면 받아 적어 가면서 좀 들어 보세요.

○**조배숙 위원** 시간 내에 하세요. 우리는 옳은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옳은 말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옳은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

○**김기표 위원** 장관님께서서는 이것을 과연 지휘해서 검찰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게 맞는지 특검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와 숙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에서도 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장이 안 오시고 권한대행이 나오셨어요. 본인도 가시방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이 법사위에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임명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재판이 아니에요. 사법행정의 영역인데 도대체 왜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설명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 121조 5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국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국회는 지금 내란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김용민 위원** 정부도 내란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김용민 위원** 사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열심히 재판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열심히 재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열심히 재판했다고 하지만 정작 내란법을 구속하지 않아서 그 내란법이 작년 12월 3일 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하지 않습니까. 왜 법원에서 내란법을 풀어 줘 버려 가지고 지금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만듭니까. 법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란 극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내란 극복을 위해서, 법원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볼까요? 내란을 극복하려면 법원도 내란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김용민 위원** 또 하나 내란이 극복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도 조직을 그에 맞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 구성부터 제대로 해 놓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대법관 제청도 안 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도 없어서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오지 않고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란 극복을 위해서 사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원이 작년 12월 3일 날, 내란 발생한 지 1년 된 그날 추경호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적어도 이런 위헌적인 상황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왜 법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 보면 결국에 종합해서 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귀결이 돼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 뭐 하는 분이나, 진짜 내란공범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해소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내란 극복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유일하게 삼권분립 늘 얘기하고 사법부 독립 강조하지만 그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느냐.

개별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의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은 의무예요. 그것을 노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개별 재판부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사법부가 내란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가 진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내란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여 줘야 됩니다.

빠르게 대법관 임명 제청하거나 법원행정처장 임명하지 않으면 진짜 다음번에는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앉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대법원장에게 지금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아직은 보도를 접하지 못했는데……

○**김용민 위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보니까 고교 동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그 법인의 사건을 보면 계속 유리하게 판결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게 혐의점입니다. 법원이 지금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재판, 국민참여재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 판사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참여재판 신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근본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재판, 이해충돌 없게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장 출석하거나 아니면 빨리 내란 극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 가서 꼭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의를 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출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처럼 우리가 의문이 많다, 국민들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법원행정처장은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번에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장께서 출석 하셔서 답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고요.

박균택 위원님, 혹시……

○박균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드루킹 특검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던 특검법이지요. 그 특검법에도 ‘제2 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특검법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을 가져와서 특검이 공소 유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특검은 윤석열이 특검이었지요. 윤석열·김건희 특검, 저희가 다 정리했는데요. 모든 특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곳에 ‘각 호의 재판 중인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 했던 특검법에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특검법에도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약 73.5%나 됩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73.5%에 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호 관련한 걸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관련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서해사건 관련해서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다. 저는 수정한 적이 없어요. 맹세코 없어요. 펜을 든 적이 없어요’라고 까만 쪽에 그렇게 김태호—안보비서관이었습니까, 안보실장—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줄로 쪽쪽 그었다는 거예요. 펜을 들고 그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을 하달받아, 당시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을 하달받아 이거를 직접 손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걸 한 적이 없다? 위증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전 화해서 자꾸 수정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드러났으니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달했구나……

그리고 김성태는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태국 이민보호소에 잡혔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유하는 전화도 하고 제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의. 그거 꼭 수사해야 합니다. 제의를 많이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거기 태국에 있는 이민보호소 태국 사람 전화를 빌려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전화를 해서 이재명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아셔야 되는데, 이들은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작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북으로는 송금이 1원도 없어요.

송금은 됩니까? 법무부장관님, 송금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돈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돈을 어떻게 보내는 걸 보통 송금이라고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걸……

○**위원장 서영교** 은행에서,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인터넷뱅킹으로 보내거나.

북으로는 은행으로 돈을 보낸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대북송금, 마치 이재명을 위해서 김성태가 손을 꼭 눌러서 돈을 보낸 것처럼, 이건 네이밍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수사를 받았고, 국회에 와서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 이야기 많이 하고 김성태하고 이재명이 공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예요. 노웅래 의원, 한동훈이 와서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 재판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무죄 나왔잖아요. 돈봉투 사건, 그거 다 조작 아닙니까?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에게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고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상용, 하이라이트는 박상용입니다. 박상용의 녹취가 온 세상에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국민도 놀라고 국민의힘도 놀라고 더불어민주당도 놀라고 판사도 놀라고 검사도 놀라고, 제일 놀란 건 박상용일 겁니다, 박상용.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고, 저는 이 녹음 하나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박상용이 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과 한 청문회에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도 지금 3분 지났어요. 그만 좀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반부패부, 대검까지 다 보고했다고 하고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은 오래간만에……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뭘 또 피켓을 준비하시고 그래. 그냥 마무리하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하나만 할게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4월 28일부터 30일 보고서, 이게 위에 대통령까지 보고되었다고 이시원 비서관이

나와서 답을 못 하잖아요. 저는 국민들께…… 이 1일 보고서 안에 보면 가관입니다. 별건의 별건을 수사한 내용이 이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 보고서 꼭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에서 하이라이트 찍었을 때 특검 가서 수사해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이 고리 끊고 모두 고리 끊어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늦게 와서, 이제 발언권 끝났어요.

○송석준 위원 오늘 선거 발대식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안타깝게, 끝났는데……

○송석준 위원 12시 전이니까 시간 3분만 주시지요.

○김동아 위원 위원장님 발언 끝났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도 순서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송석준 위원님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불법·위헌 국정조사특위를 강행하더니, 거기서 분명히 증인들은 명백히 여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검사들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런 사건, 이 죄를 지우겠다고 또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특검이라는 게 뭐니까? 야당이 힘센 여당을 상대로 어떤 권력의 여러 가지 불법·비위 의혹에 대해서 아까운 국민 세금을 들여서 특검을 만들고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멸절 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심지어 이제는 사법파괴 악법 3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독재의 길로 가고자 합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바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여권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특히 내일도 무슨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경성헌법입니다.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 그것을 마음대로 흔들어서 이제는 앞으로 독재로 가는 길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런 위험한 시도를 위한 연성 개헌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특검법 내용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뭐니까? 특정 사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 사건을 다 갖다가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지우게 한답니다. 입법부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법입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법이고 법치주의 파괴하는 법입니다.

다.

또 무죄가 정말 확신된다면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재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소취소가 웬 말입니까? 공소취소는요 원래 형사소송법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재, 획책 즉각 중단해 주시고요. 법사위에 오늘 이러한 관련 법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곧 올라온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가운데 이렇게 천하의 악법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삼권분립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6월 3일 반드시 심판하셔서 이 위험한 범여권의 시도,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말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토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간단하게 소회의 말씀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법무부도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 검찰의 권한의 오용과 남용과 관련해서 깊이 반성과 성찰하고 있습니다. 인권준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님.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기우종 오늘 소위로 회부된 안은 소위에서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요. 상정되지 않은 안은 상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각 당에서 의원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아, 더불어민주당은 2시 반에 원내대표 선출 부분이 있어서 3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곽규택 위원 3시는 너무 빠른 거 아니가요? 3시 반으로 해 놓으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3시 반?

○곽규택 위원 예, 3시 반으로 해 놓으세요.

○김용민 위원 3시 반이 오히려 더 애매한 시간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그쪽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우리는 2시부터예요.

○**위원장 서영교** 2시부터?

○**김용민 위원** 우리도 2시부터 하는데 3시……

○**곽규택 위원** 2시 반부터 한다며?

○**김용민 위원** 아니, 선출은 2시 반이고 시작은 2시부터 하고.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다 2시부터 하니까 3시에 우선 하시고 사정이 있으면 조금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충분히 오전에 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타위법을 빠르게 통과시킨다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체토론을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시에 속개하여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 분이 더 오셔야 의결이 가능하네요.

오후 회의에서는 9개 위원회 소관 63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경위 법안입니다.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2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서영교** 먼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개편하면서 등록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가상자산 이전업자의 약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2항, 23항, 2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백승보 조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좀 천천히 해 보세요, 나 구윤철 장관한테 물어볼 것도 있는데.

○위원장 서영교 구윤철 장관님한테, 그러면 3분 이야기하시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경원 위원께서 전체회의 진행을 위해서 혼자서라도 오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가능하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 서영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 중인데 이렇게 오시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되신 것 같아서.

○나경원 위원 저희가 의원총회 중이라서 조금만 늦게 개의해 주셨으면 했는데 열어버리셔 갖고 지금 제가 오기는 했거든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아까……

○나경원 위원 안 그래도 민주당이 일방 통과를 막 시키는데 이것까지 또 다 통과시킬까 봐 왔는데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나도 참석을 못 하고 계신데?

○김용민 위원 이 안건에 일단 토론이 없으면 정리하시고……

○나경원 위원 저는……

○위원장 서영교 이 안건들은 다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서영교 국토위 안건만 그러니까, 그때 가서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지금 토의할 게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민주당 왔다고 통과시켜 버리시면……

○위원장 서영교 그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 계실 때 3시에 하자고 합의를 보았었지요.

○나경원 위원 일단은 양당의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3시에 하자고 했지만 우리 의원총회가 지금 길어지고, 특히 또……

마이크를 주시든지요,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 서영교 마이크 드리세요.

○나경원 위원 지금 의총이 길어지는 이유가 내일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개헌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또 공소취소 특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의총에서 논의할 게 많아서 의총이 길어지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또 오늘 이 법안까지 한다면 국회 뭐 하러 합니까? 여야가 합의됐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시

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삼십 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 의총 끝나는 대로 열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 그래도 동네 갔더니 요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서영교 아, 그래요?

○나경원 위원 (웃음)

예, 서영교 위원장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당 위원들이 1명도 참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도 너무 많이 올리셨고 또 이 중에서 저희가 토의할 것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삼십 분 안에는 저희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장관님들도 기다리시는데 지금……

○위원장 서영교 계속 기다리셔서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를 들면 이 안건에 없으면 일단 이 안건은 처리하고……

○나경원 위원 장관님들 오시면 현안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들도 많고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자꾸 속도를 내서 할 게 아니라, 사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간사 없는 법사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김용민 위원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나경원 위원 그리고 2소위가 없는 법사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김용민 위원 2소위는 있어요.

○나경원 위원 타위법안을 2소위라도 가서 한 번 스크린이라도 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용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법사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사도 없지, 2소위도 없습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양당 의원총회라서 조금 늦게 개의하자 했는데 우리 당 의원총회가 좀 늦게 끝났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면 국회를 열지 마세요. 국회 하는 데 저희가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삼십 분만, 어차피 늦어진 것 이삼십 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5시에 지역구 가서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열게 된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지역구 핑계 대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서영교 아니, 제가 아까 ‘그러면 4시에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아니,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라고 전화를 다 드린 거예요, 위원님.

○나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당 의총이 안 끝났다고,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의총이 안 끝났으니깐 다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사실 약간 오해를 하신 거고, 원래는 ‘양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4시에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일정

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아니면 안 되겠으니 저희가 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나경원 위원 그런데 민주당은 의총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아까 저도 ‘4시에 하자’ 그러고 내려가려고 했다가……

○나경원 위원 민주당 마음대로 해요, 그냥.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나경원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 합의된 거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위원장 서영교 연락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나경원 위원 전화했는데 지금 다 발언한다고 기다리신대요. 저도 의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 다 발언하고……

○박지원 위원 지역구 빨리 가세요. 나경원 위원, 지역구 빨리 가. 시끄럽게……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것만 통과시키고 가세요, 위원님.

○나경원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끄럽게’라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시끄러운 겁니까?

○박지원 위원 안 되니까 가라고요.

○위원장 서영교 나경원 위원님, 이것만……

○나경원 위원 알아서 하세요.

○김용민 위원 잠시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정회해도 우선 이 법안은 통과시켜요, 재경위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3항 및 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스피가 7000을 넘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대한민국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아지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잘 살려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지원금들이 곳곳에서 잘 쓰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데 숨을 살려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세 분이 더 잘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윤철 장관님, 박홍근 장관님, 백승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출)

2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27항과 28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연계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자에게 연구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실비 납부 및 출처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도로 건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인허가등의 일괄처리 신청 및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또는 LNG로 생산한 전기의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구매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사업자등이 관련 인허가등의 일괄처리를 과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기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허가등 처리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일정 기간 내에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취치이긴 하지만 과기부장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까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제2조의 행정기관 직무범위의 법정주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구역에 한정해서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두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참고할 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과기부장관의 인허가 처리 절차 신속 개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과기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망 우선설치, 전력거래 특례,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전력공급시설 직접 설치 규정 등에 대해 전기사업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부총리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법 이게 법사위에 상정되기 전까지 기후부와 사이에 이견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쟁점 사항이라든가 이것 추후의 협의 과정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존 GPU 26만 장은 정부에서 계획을 했었고 그 GPU 26만 장이 약 500MW 정도의 전력 소요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 AI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짓겠다는 여러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여러 의사들이 타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 5GW 정도 이상의 전력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과연 지금의 재생에너지로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에서는 LNG PPA를 포함한 AIDC 특별법 제안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상정이 됐었고, 다만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전력 수급 상태로 5GW 이상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고 기후에너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AI 3장을 이루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과방위 통과했던 안이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방금 보니까 정부의 수정안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기후부와 함께 협의가 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함께 협의된 안이고 과방위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 정부 수정안대로 하면 정부 내에서는 따로 이견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할게요.

삼성SDS에서 해남 솔라시도에 2조 9000억의 AI컴퓨팅센터 건축허가 신청을 해남군청에 했어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자꾸 늦어져서 저는 빨리해 드려라 하고 독촉을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라 했더니 과기정통부에서 그러한 보도 자료를 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도 자료도 과기정통부만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낼 수 없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미 삼성SDS가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특히 최근에 국민성장펀드 지원도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비밀도 아니고 또 삼성이 해남에 투자하는 것은 해남군민들로서는 영광이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보도는 나왔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기쁜 소식이니까 알려주자 했더니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장관님이 모르셨다고 하면 한번 알아보세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제가 조속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일단 박균택 위원님께서 아까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IMF가 5년 뒤에 한국이 대만보다 국민 GDP가 1만 달러 격차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러한 격차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라는 차이도 있지만 대만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탄탄한 풀스택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만이 글로벌 IT 회사 아마존, 구글, MS, 애플 등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PPA 이 법안이, 이 특별법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어젠다인 AI 3강 도약을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IMF에서 예측하는 이런 우려 사항도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과방위에서 올라온 부분이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NG와 그 외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전원에 대한 PPA를 규정하는 19조의 2호·3호 그다음에 2항이 삭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내에서 이렇게 조정은 됐는데 특별한 우려 사항이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고 저희도 우려 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부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단 충분히, AI 데이터센터가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가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전력수급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2030년까지?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2030년까지의 계획이고. 다만 저희가 기후에너지부와 안건을 합의한 것 이외에 MOU 문건을 맺습니다. 그래서 같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공급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문제없이 현재의 전력상태로 충분히 공급은 가능하나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더 AI 강국이 되고 소요가 더 많아지고 만약에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든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논의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열어 놓고 기후에너지부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 반영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있어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시는 김에 재외동포청장님, 우편투표제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우편투표제가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는데요 합의는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여야 모두 다 우편투표제 동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외통위에서는 우편투표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정개특위에서는 야당에서 일단 우편투표에 반대하시는 분이 나와서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은 우편투표는 안 되는데 전자투표를 하자라는 의견이 하나 더 주장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더 이상 합의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군요. 중국이나 독일 이런 곳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야 하고 그리고 1박 2일 달려야 하고, 그런데 영사의 투표소를 찾아가기 위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차를 카풀해 가지고 가도 선거법 위반이라 그런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n분의 1로 내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재외동포분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행안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고……

○위원장 서영교 오랜 숙원이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아주 간절한 요구입니다, 정말 투표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론이 나와 내년에 시스템 구축 예산도 편성을 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시스템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데 한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래야지 다음번 총선에서 실질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금년 내에는 결론이 좀 나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게요. 좀 적극적으로 여야 의원님들을 만나셔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위원장 서영교 김석기 의원님 같은 분은 적극 찬성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시던데.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아직 당내에서 논의가 돼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재외동포청장님 관련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겠다고 잠시 정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셔서……

국방부장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한 5분 정도 정회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시 10분이고요. 4시 12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시계로 4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할까 합니다.

국방부장관님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31.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께서는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4건의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방위사업

청장이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에 대한 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구매사업 및 방산육성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비용 일부와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및 우주항공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비용 보상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규백 국방부장관, 홍소영 병무청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4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백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좀 기다리시게 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한민국 국방 더 튼튼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서영교 안규백 장관님, 홍소영 청장님, 이용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안위 법안입니다.

36.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3) (16시29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2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생명안전기본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칙 제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기준’에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안전기준’이라는 용어와 동일하지 않고 제정안 본칙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규정도 없으므로 부칙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와 관련된 부분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문 역시 개정안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 소관 법률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농해수위 법안입니다.

3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3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3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2.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5.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이 가장 바쁘시군요.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11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시장·군수가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20조 제4항은 시장·군수가 준공인가를 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준공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농어촌정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도 타법 개정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어 8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02호 농지법과 동 개정안은 각각 제15조 및 제28조를 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2026년 8월 28일부터’로 수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은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계획을 지방의회에 통지할 때의 의견제시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키려는 것인데 의견제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경우 기존 의견제시기간에 대한 지방의회의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항로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로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하목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를 농지법상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로 규정하여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허가일로부터 30년 내의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며,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농지의 임대차계약은 사적자치 영역임에도 행정청이 농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대집행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취지에서 농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상 의무 불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포상금 지급주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불법어업 예방·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보고 의무, 명예감시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시도 단위의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정안은 불법어업 등의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어업 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안건 심사 시 동 제정안의 심사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의 운영기관을 기존 보조항로사업자에서 공공기관 등 공영항로운영기관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선 운항명령 사유에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없게 된 경우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44항 및 4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오셨습니다.

그리고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9항부터 제47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황종우 장관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두 부처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총이 다 끝난 뒤에도 이렇게 와서 하시고 계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께 언제나 필요한 일 상의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 지원할 일이 있으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법 집행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김동아 위원 산불 카르텔 잘 밝혀 주세요. 제가 질의하려다 말았습니다, 산불 카르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위 법률안입니다.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38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48항과 49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장에게 병역법상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 제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인구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아동수당법에 옮겨 규정함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아 위원 저 장관님한테 하나만……

○위원장 서영교 예, 3분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장관님, 아직 공론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기초연금 못 받는 분들 계시지요, 연금 수급자들 중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동아 위원 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수급자가 아니지요? 연금을 일시금이라도 받았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직역연금 수급……

○김동아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제도개선은 잘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와 또 정부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직역연금자 중에서도 굉장히 연금 금액이 낮은 그런 부분들 또 배우자 문제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직역연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역시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기초연금이 지금 한 35만 원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3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김동아 위원 되고, 부부 합산은 55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20%……

○김동아 위원 1년으로 치면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까지 반영하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기초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처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내년까지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예산편성 전까지 개혁방안이……

○김동아 위원 아니, 지금 연금을 계속 올리자라고, 기초연금 올리자라는 논의는 계속 하고 실제로도 올리고 있는데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 중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김동아 위원 지금 그분들은 소수여 가지고 어디 하소연도 제대로 못 하고 완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더 열악해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지만 이 국가에서 나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선제적으로……

○김동아 위원 좀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법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빨리 반영을 해서 불평등을 없애야지 그것을 그냥 전반적인 기초연금 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 끼워 넣어서 같이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기초연금 개혁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그런 방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동아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꼭 약속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정부 내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논의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부 차원 말고도 기재부나 청와대랑도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꼭 해서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없어지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회 명칭이 바뀌게 되고 좀 더 확대 구성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법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자꾸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전면 개정안으로, 저는 인구정책기본법으로 했는데 인구전략기본법으로 통과시켜 오셨는데요. 하여튼 인구를 전략적으로 가자는 거지 인구를 전략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을 전략적으로 본다 이렇게 될까 봐, 그러지 않게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 서영교 0.72였던 출생률이 1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최근에 1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아직 0.9……

○위원장 서영교 0.72가 1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0.72가 1로 올라갔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아기가 태어나면 첫만남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서 아기를 양육할 경우에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가 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 서영교 0세부터 한 살까지 매달 100만 원씩 부모급여가 가고 1~2세는 매달 50만 원씩 부모급여가 가더라고요. 제가 이 법을 만들면서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아주 소중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아이가 행복이고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꼭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감사합니다.

5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322)

5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8)

5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5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16시43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0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60항까지 11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외의 지역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그 운영 등을 관계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0조의2에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상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제52항, 제54항, 제56항 및 제5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1항, 제53항, 제57항, 제58항 및 제6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장관님,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한 건데 55항에 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요 이것은 합의가 다 되신 것 같기는 해요.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상 하수 업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법 검토 과정에서 관련되는 지자체의 의견을 좀 청취해 보셨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당연히 지자체 의견을 들을 텐데 이게 아시겠지만 도와 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후부장관이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서 있는 일은 대체로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샘플링을 해서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들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꼭 챙겨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53항, 57항, 58항 및 6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 52항, 54항부터 56항까지 및 5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아쉽지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6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63.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6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0)
6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66.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6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7.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6시49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84항까지 2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위 소관 24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서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 사안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하며 각종 특례를 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안 제13조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특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승인취소 등 주무관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제6장을 신설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고 행정감독 권한자는 감독 내용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건축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지하 주차장 등의 화재 예방 기준을 강화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실태조사를 위해 과세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지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도심 복합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며 일정 기간 내 토지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의한 주민 등에게는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재조정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위한 첨부서류, 통합심의 실시 시 검토·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 등을 다른 사업계획과 다르게 규정하면서도 종전 규정의 괄호 등을 두는 형식으로 법문을 구성함으로써 문리적 해석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제원리에 따라 별도의 항과 호로 나누어 명확하게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종래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차량·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제도로 변경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정하여 해당 구역에서는 조류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환경이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래의 자체검사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검사의 대상·항목·주기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의 기준이 되는 ‘공항 표점’의 정의를 ‘공항개발 시행계획 등에 포함하여 고시되는 공항 표점’으로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조류유인환경’의 정의에 넣어서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른바 ‘승차구매점’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 추가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장

이 조례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거나 세분화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 제37조제3항은 각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단위부담금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군·구’ 등의 단위에서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단위부담금의 조정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부동산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 제23조의3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표시·광고의 대상인 ‘부동산등’에서 ‘중개대상물’을 제외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의3제3항의 경우 부동산등이 존재함에도 실제로 거래할 의사 없이 표시·광고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자연인의 ‘내심의 의사’에 대해 처벌하는 법리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해당 행위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방치건축물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빈 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령 체계를 지역별·유형별 통폐합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정기적인 빈 건축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 지정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시장·군수 등이 조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첫째, 과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민간기관인 전문기관이 행정기관·공공기관 장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은 행정절차 관련 법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해당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0조제1항 3호에서 일반적인 행정대집행 사유에 해당되는 철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행정대집행상의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 3항에서 요구하는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연계 법률안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 이 법안의 시행일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통일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부칙(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을 개정하여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자동차매매업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을 할 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종전 부칙에 대한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등록취소가 된 후 동일 장소에서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2015년 법률 개정 전에 완화된 등록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취소 사유에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해당 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도 포함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제도의 취지 및 등록취소 관련 규정 체계 간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취소 사유 중 위법성이 중대한 사유로 취소되었던 경우는 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철도보호구역 내 타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안 제45조의2의 경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출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로 조사·측량,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타인의 건물 내부까지 출입 또는 사용할 실질적 필요성이 부족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입·일시사용 대상에서 건물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출입 가능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위법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조사 등의 실시 근거를 구분하여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50조제4항의 형벌 조항과 관련해서 현행법 제14조 4항의 보안점검과 제15조의 보안검색 의무를 각각 위반하여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한 사람에 대해 각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과 검토가 요청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등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에서 항공기 납치행위, 항공기·공항 파괴행위 등의 불법방해행위 발생을 객관적 범죄구성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보안검색 업무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법성 및 책임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여 법정형을 부과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추가된 불법방해행위 발생 구성요건을 2개의 범죄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모두 결과범 형태로 수정하는 한편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이를 개정안의 법정형보다 낮은 법정형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84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종래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자료 11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어마어마하게 긴 검토보고서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도 많고 해서…… 보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그러면 교차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가 길어진 이유가 갑자기 국토위에서 법안 24개를 갖다가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이 문제도 많지만 일단 절차적으로 봐서도 국토위 소위에서 추후에 여야 간에 좀 더 논의하기로 한 부분을 갑자기 번복시켜 가지고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통과시킨 부분도 있고 소위에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은 것을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지금 법사위로 온 것도 많다고 그래요.

법사위에서 타위법에 대해서 2소위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법사위가 무슨 다른 위의 따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절차 위반하고 보내도 법사위에서 다 통과되더라 하니까 모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제 여야 합의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내용으로 봐 가지고도요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 67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전자대금시스템, 전자카드 연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이 다수 발견되어 소위 계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전체회의 일방 상정 후 처리했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영교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또 6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경우에 건물의 내화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강행 처리 이런 식이거든요.

69항도 그런 내용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또 보면, 다 언급하기가 참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72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74항, 75항 이게 내용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갑자기 국토위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올려 가지고 그냥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라? 아무리 체계·자구만 보도록 돼 있지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법까지 그냥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24개 법안 중에서 국토위의 소위를 아예 안 거치거나 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통과시키거나 이런 법이 지금 12개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 법사위 2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거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국토위에서 완전히 그냥 법사위를 무시한 이

런 무더기 법안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 24개 법안 전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 다시 계속해서 계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장관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장관님, 제가 현안 좀 여쭙볼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 선고받은, 현재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교도소 안에서도 임대사업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장관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도에 따르면 허위 서류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에 이를 미끼로 180억 원 정도 전세계약 체결하고 보증보험에서 취소를 한 거지요, 사기니까. 그랬더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선고를 받았습시다. 현재 복역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단기임대 형식을 통해서 세입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경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법적 소유권이 이 수형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수익이 피해자나 HUG 같은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아마 수형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범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경매 물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실상 편법 임대인데요. 새로 들어온 단기 임차인들이 또 추후 경매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경매 방해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큰 문제는 국민적인 법 감정인데 이 180억 사기범이, 거액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복역 중에도 다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단기임대 사례가 있는지 국토부에서 좀 살펴봐 주시고 이런 거액의 임대 사기범이 수형 중에 이렇게 다시 사기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해서 정리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우선은 이 사건의 경매 절차 빨리 진행이 돼서 피해자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얼마간이라도…… 그래서 이게 다시 임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 신동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저도 존경하는 광규택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이게 법사위 2소위가

지금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은 대부분 상임위의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일부 의견이 있기는 합시다만 대부분 다 법사위에 서는 큰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이번 국토위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쪽에 알아봤더니 이게 무슨 국토위가 완전히 과행이 되어서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경우가 아니고 쪽 꾸준하게 소위 열고 해서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고 또 대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에는 합의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야 되는 이런 법안들인데 느닷없이 4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세부 조정을 위해서 소위의 보류된 안건 그리고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안건까지 지금 다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를 시켰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급하게 그 내용들을 쪽 봤더니 저희 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들이 너무 이상하거나 어떤 정치적 쟁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들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공장 창고 지붕 내화구조, 그러니까 불나지 않게 구조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많이 존재하고 또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 소규모 건축주들이 질 부담은 어떤 것들인지 또 국가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폐교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안들도 거기에 아마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사위에서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국토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은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가 열리면 거기에서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국토위에서 올라온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조정하고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류를 시키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마 아까 광규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운영권을 가진 정당이 자기네들 필요한 것 법사위에 가면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다 통과시켜서 넘어오면 우리 상임위도, 사실 법사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위원님,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부분은 있으신가요?

○신동욱 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용민 너무 많아서?

○신동욱 위원 이게 건수가 너무 많고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단계들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용민 왜냐하면 지금 장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

○신동욱 위원 물어볼 것도 많은데 너무 많아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내용을 물어보시면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질의하

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운 위원** 전주출신 이성운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너무 많다, 급하지 않다 또는 제2소위에 계류시켜 가지고 더 해 달라 이런 논의를 하는데. 장관님, 이것 법안이 하나하나 다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소중한 시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습니다.

○**이성운 위원** 그중의 하나가요 82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약 14만 8000동에 달하는 건축물이 경미한 위반건축물이잖아요, 예를 들어 비가림 지붕을 설치했다든가 보일러실을 설치했다든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서민들이 집을 조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붙고 또 시달림을 받고 대출도 안 되고 또 집주인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이런 것을 전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왔었고 작년에 우리 정부 출범할 때도 신속히 해결하자고 국정과제로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이성운 위원** 제가 있는 전주에도 이런 위반건축물이 많아 가지고 제가 전주 갈 때마다 이걸 왜 시정 안 하느냐, 언제 법안이 통과되느냐, 언제 시행령은 만들어지느냐 이런 질의가 많습니다. 이걸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운 위원** 이 법안 하나하나가 정말 서민들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데 어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4월 22일 날 운수종사자 약 80만 명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할 경우에 뭘 하나 하면 벌점을 매기고 또 범칙금을 매기고 거기다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은 매년 한 번씩, 그다음에 6~10년은 격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두 번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10년에 일곱 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이 하는 말이 일반 국민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건데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교육을 좀 줄여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자녀들 보기에다 약간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4월 22일 날 2차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속히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서둘러서 위원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장관님, 법안 12건이 저희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만 주택공급하고 연관된 법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저희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장관님, 올해 수도권에 6만여 가구 공급하려고 그러나요, 현재 목표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상현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안 되고 또 주민 의견이 배제돼서도 안 되고 또 기반시설이 준비가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보류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2소위라도 보류 의견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월 29일 날 장관님께서 공급대책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3월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하겠다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상반기 내에 하겠다고……

○윤상현 위원 상반기로 정했습니까? 그래서 주거복지로드맵이 먼저……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타 부처하고 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주거복지로드맵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주거정책의 상위 설계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빈집이라든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또 학교용지 복합개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기본적인 상위 설계도가 있고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관님, 간혹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요? 자꾸 대통령이 SNS로 정책을 먼저 선도한다, SNS가 나오고 결국 국토부에서 따라가기 바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부동산 문제는 국가 존망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대통령이 가진 소신이라든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 있고 주도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X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성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국토부가 정말 준비를 잘해서 그런 대통령의 뚜렷한 소신과 의지를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10·15 대책 이후에 6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보면 결과적으로 풍선효과가 나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 다주택자 문제하고 관련해서 결국에는 전월세가 가격 상승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전월세 문제도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 결국 전월세 가격도 안정화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시적인 미스매치라든가 그런 병목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또 한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 차원에서는 주택공급을 서둘러서 빨리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법안 관련해서도 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경부라든가 또 금융위라든

가 주택 관련된 범부처 차원에서 협의해서 세제 문제는 규제 문제는 공급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이 나중에?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맨날 간사 늦게 하시니까 먼저 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장관님, 항공보안법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아까 수정의견 냈던 것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기존 국토부안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는 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가는 게, 저희가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뭔가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것을 성안해서 의견을 주시면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보면 앞부분은 고의범인 건데 뒷부분은 결과범인데, 이것은 의무를 해태해서 결국에는 결과가 발생한 범죄라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고의범이 보통은 높지요. 그렇다 보면 앞의 고의범과 그다음에 뒷부분이 결국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같은 형으로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크게 위반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실에서 수사·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양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이렇게 국회 논의 과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논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결정이 되시면 어느 안이든지 저희 국토부는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토부안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용민 위원 이게 좀 신속하게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4차 계획에 6호선의 차량기지 이전하면서 연장하는 안이 지역 간 이견으로 추가 검토사항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지역 간 이견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광위를 통해서 지역 간 이견을 지금 강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존의 추가 검토사항 6호선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바로 왕숙신도시입니다.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가장 큼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왕숙신도시에 지금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9호선 하나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6호선이 연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을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게다가 기존에 원래 살고 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은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훨씬 더 유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망들이 종합적으로, 종축이 생겼으면 횡축도 같이 고려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이 너무 타당하시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국토부가 직면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4차 철도망 예산이 43조 원이 투입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5차 철도망 계획을 잡게 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게 한 60조, 70조 이상은 되어야 4차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지방 교통의 혁신 또 활성화 측면까지 하게 되면 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의 어떤 현실, 망 계획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회에서도 그 철도망 계획에 총사업비가 많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너무나도, 철도 현실에서 볼 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 국토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참고로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거라 기존 차량기지를 매각한 대금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를 구축하는 비용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상쇄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장관님, 우리 당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 법안이에요.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었다가 뭔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의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4월 30일 날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꿰서 못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게 너무 많습시다만 78항에 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대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문제가 된 게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 가구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 시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원래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건강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어떤 법적인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오염 문제도 제기됐

고 또 거기 한 위원은 지자체의 의견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왜냐하면 녹지가 감소하니깐요—그런데 용산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만 답이 오고 도시계획과 의견이 제출이 안 됐어요. 아니,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주택이 부족하니깐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공급 수를 늘려야 되니까 선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정책을 그렇게 선거 때문에 허겁지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까 장기특별공제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하나가 있는데, 직장이 세종시로 발령됐다가 이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거주를 못 하고 주택은 하나인데 전세를 주고 전세를 가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투기꾼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장기특별공제라는 게 뭐냐면 원래 생겼던 취지가 물가상승분 감안해 가지고 장기 보유를 장려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거주요건 내세워 가지고 소급 적용하면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리다 보니까 내가 거주요건 채워야 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서 살던 사람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매물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런 부작용이 큰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서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안도 나오고요. 물론 민주당 의원님은 아니시지만 다른 무소속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말이에요. 도대체 그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캠프킴 땅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공원 옆의 땅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캠프킴이라는 부지는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녹지 개발이라는 게 일반 주택법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캠프킴의 주변 녹지 조성을 고려해 볼 때 복합용도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좀 녹지가 과하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법의 수준으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녹지가 많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녹지 수준이 아닌 주택법에 근거한 녹지 수준으로 특례를 주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야당 위원들하고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느냐고요.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가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근거와 신속성에 대해서 의견을 표했던 거고요. 국회 차원의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하시고 박균택 위원님 하시지요.

○**최혁진 위원** 장관님, 이게 급하게 됐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법안을 하나하나 보니까 급한 게 아니네요. 굉장히 오래된 과제들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많이 부각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하는 것 이것은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도시 안에서 주택공급 하는데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여러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도 굉장히 더뎠고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그것 말고도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도 놓여준 빈집 문제 정비해야 한다는 것, 이 빈집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 초기 대응이 늦어 가지고 이후에 굉장히 큰 재정을 투입해서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니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얘기들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국토위 안에서 여야간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든 다양한 과정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국토부에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입법이 좀 늦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나온 것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외에도 보면 대부분 안전 관련된 법안들이 많아요. 철도안전법 이것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지금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이것 처벌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지금 이것 체불임금 대응체계 강화하는 내용이잖아요. 대한민국 체불임금이 지금 거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상황인데 문제인 정부 때도 이 문제에 대응을 했었지만 충분치 않아서 점점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던 거니까 지금 민생이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 이거는 학교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학교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들도 많은데 이런 복합개발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근린서비스의 기회를 줄 수 있고 학교에는 부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법 하나만 고치면 다 해결 가능한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법들도 아니고 여야 간에 다룰 일도 아니고 이 법이 빨리 간다 그래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이 뒤집힐 일도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걸 굳이, 무슨 여야 간에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다. 도대체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뭘 했길래, 이런 법안에 대해서 먼저 제시하고 먼저 개정안을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 끌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제가 다 봤는데 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현장에서 논의가 나왔던 법안들이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법안 다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전심전력을 해 주십사, 장관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 지금 초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산 당국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 7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서해안 철도, 즉 서해선이 군산에서 무안까지 연장되게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건의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한반도를 U자로 연결하는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구간만 지금 비어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채워졌을 때 한반도 U자 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전북·전남·광주 모든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내고 건의안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서해철도의 경제성을 높이고 호남지역 철도의 철도 광역망 이것을 제대로 갖추려고 한다면 수요가 많은 광주 서부 지역에 산업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산업단지도 많은 광주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주 신산업선 이것을 신설해서 서해철도에 연결하는, 덧대는 계획이 함께 추진되면 좋겠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번 철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에 이미 대구 산업선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형평성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논제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짧게 한 마디만……

○위원장 서영교 예,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김윤덕 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지원 위원 벽오동 심은 뜻은 아실 거고.

제가 장관님이 취임했을 때 호남선 오송역으로 가면서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KTX 요금을 다시 산정해야 된다. 우리 호남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도 그때 하시겠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지원 위원 언제 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

○박지원 위원 그렇잖아요. 철도 요금은 거리로 산정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짧아졌으면 당연히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맞는데 왜 안 해 줘요? 장관님도 얼마나 많이, KTX를 이용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장관 됐으니까 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대구, 부산을 요즘 자주 다니는데 경부선은 거의 10분 사이로 KTX가 움직여요. 호남선은 2시간 이상이에요.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지원 위원 지역구 전주 가시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장관님이 계실 때 좀 하실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선로 이용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서 최소한 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KTX와 SRT가 통합되는 용이한 조건이 조성되면 중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장관님이 피해자고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KTX 노선, 철도노선의 요금 산정은 재조정해야 된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경부선이 승객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호남선에 배치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꼭 고쳐 주세요. 그리고 잘 부탁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지원 위원 ‘예’ 하셨어요.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질문하겠는데요. 우선 특정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번에 통과시키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서영교 법적으로 위반했는데 왜 그것을 양성화하느냐 이렇게 국토부가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세사기의 대다수가 특정건축물 위반, 빌라를 개조해 가지고 들어가서 좀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기도 했고 급해서 들어갈 때 부동산이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개조한 거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신혼부부라서 처음 가서 생애 얻었는데 그래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20대·21대·22대 이렇게 대표발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 와서 그냥 귀 기울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수천 명이 그렇게 당하고 그게 나중에는 전세사기였더라고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 확 높여 주잖아요. 대기업 들어오고 막 이러면 용적률 확 높여 주는데 조그만 집에서 조금 고쳤다고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 왔거든요. 이번에 잘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서영교 제가 몇 번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애쓰셨습니다, 갈등이 많으셨을 텐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 지나고 나중에 ‘나 그때 몰랐어’ 이러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양성화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건축법 옛날 법이고 그리고 건축자들이 잘못해 놓고 그렇게 팔아넘기고서는 도망가고 그리고 그것 준공할 때 구청은 준공해 주고.

지금 저희 동네에도 청년주택이 짝 지어졌는데 거기에 2층 이상은 주택이라 괜찮대요. 2층은 싹 다 근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끊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뒤에 계신 국토부 직원 여러분, 다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시정비사업 예정 지역에서는 예외다 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도 문제 제기하던데 제가 보기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오래된 건축법에 매여 있는데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통계 조작이라고 감사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데요. 그분들이 여기 다 나와서 있었어요. 많이 울고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오죽하면 송석준 위원은 그분들은 전부 다 공소취소 해 주라고, 송석준 위원이 국정조사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소취소 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옆방에서 감사할 때 고성 들려 주고 그리고 4개월짜리 야기 육아하는데 아침 10시에 불러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감사하고. 거기도 목표가 정해져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판은 1심도 안 끝났는데 벌써 몇 년째 재판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서 국토부에서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통계 조작은 없었다’ 이게 감사원이 자기네가 했지만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 통계 수정이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그분들의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가 버려서 안타깝게 들지는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김동아 위원 광규택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서영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결에는 불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절차를 잘 갖춰서 오면 저희가 충실히……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서영교** 예.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 없는 김에 그것 한번 틀어 보세요.

(웃음소리)

국토부 직원들이 무서워서, 여기 왔다가 그들을 감사했던 감사 직원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무섭다고 연락이 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11명이 모두 다 가림막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잠깐 이것 좀 틀 수 있게 시간 좀 넣어 주세요. 1분 넣어 주세요, 1분.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진의와 다르게 진술을 해 버려서 그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렸다 이러더라고요. 11명이 오셨었는데 다섯 분밖에 얘기를 못 들어 줬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얘기도 좀 더 들어 봐 주시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송석준 위원 왓 ‘저분들은 다 공소취소 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한 네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공소취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께서 잘 이야기도 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희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3항까지, 제66항부터 제82항까지 및 제8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0조 벌칙 부분을 기존 국토위 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국힘 위원님들이 계셨으면 한 안건, 한 안건 다 표결해야 될 상황이었습시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에게 또……

○**박지원 위원** 제가 와서 됐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이 안 오셨으면 의결정족수가 모자랄 판이었습시다. 그런데 박지원 위원님이 오셔서 의결정족가 되니 또 국힘에서도 나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국토부장관님께서도 잘해 주시고 소수·약자를 위해서 더 챙겨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귀 좀 잘 기울여 주시고요. 항상 그 래 왔지만 더 잘 기울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윤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보좌진, 특히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특히 경위, 특히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곽규택 김기표 김동아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성윤 전현희 조배숙 최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검찰국장 이용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조달청

청장 백승보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권한대행 기우종